



제293회 남양주시의회(임시회)  
제1차 자치행정위원회

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2023. 3. 20

자치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서용관

#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

## 1. 제안경과

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

## 2. 제안이유

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,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한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 (안 제3조)
- 나.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(안 제4조)
- 다.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 (안 제8조, 제10조)
- 라. 통·리·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단서 신설 (안 제8조제2항)
- 마.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관련 규정 정비 (안 제13조~제16조)
- 바. 그밖에 부서명칭 변경 및 부칙개정

## 4. 참고사항

- 가. 참고자료 : 붙임1
- 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참조)
- 다. 관련부서 : 자치행정과
- 라. 입법예고 : 2023. 1.26. ~ 2. 15. (20일간) / 의견 없음.

## 5. 검토의견

본 안건은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다만 개정조례안 제6조 제3항의 법 제10조제3항에 “따른”을 “따라”로,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짐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재정수반요인

개정 주요내용이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및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,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사항으로 재정 수반 요인 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### 3. 미첨부 사유

해당없음

### 4. 작성자

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장 이형진